

#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·유예자 및 비대상자 안내

(2021년도와 동일기준 적용)

## 1. 면제대상자 (관련 근거 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)

○ 면제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군 복무 중인 사람</b>(단,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외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당해연도 6개월 이상 군 의무복무* 중인 자(해당 자격 종사자는 제외)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<b>군 의무복무(현역병, 전환 복무자, 보충역 등) 중인 사람을 일컬음</b></li> </ul> </li> <li>- 군 복무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복무기간이 <b>6개월</b> 이상이면 보수교육 면제, <b>6개월</b> 미만이면 보수교육 이수</li> </ul> </li> </ul> <p>(예) 군 의무복무(현역병, 전환 복무자, 보충역 등 포함)로 `21.11월 입대 후 `23.8월에 제대한 경우, `21년 보수교육 이수, `22년 보수교육 면제`              ⇒ 현역병, 전환 복무자(의무경찰, 의무소방), 보충역(사회복무요원) 등 군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은 면제임.</p>
○ 면제 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(자격증 발급일 기준)</li> </u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「자격신고시스템」 접속</li> <li>② “보수교육 면제·유예 신청서”작성 및 제출(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: “<b>대상</b>”) (증명서류 예시)군 복무 확인서, 응급구조사 자격증(사본 가능) 등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수교육 면제 확인은 해당 연도에 한하므로, 같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면제신청을 해야 함</li> <li>- 처리 기간 5일</li> </ul> </li> </ol>

## 2. 유예대상자 (관련 근거 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)

○ 유예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본인의 질병으로 병가 또는 <b>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</b>로서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<b>기관장이 인정하는 자</b></li> <li>■ <b>당해 연도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</b>로서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<b>기관장이 인정하는 자</b></li> <li>■ 소방관서 등에서 <b>당해 연도에 8개월 이상 응급구조사 자격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갑자기 응급구조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변경된 자</b>로서 당해 연도의 남은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<b>기관장이 인정하는 자</b></li> </ul>
○ 유예 신청방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「자격신고시스템」 접속</li> <li>② “보수교육 면제·유예 신청서” 작성 및 제출(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: “<b>대상</b>”) <b>[증명서류 예시]</b>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(직무 분야, 휴직기간 명시), 입·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(입원치료기간 명시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해당 연도에 한하므로, 같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함</li> <li>- (처리 기간) 5일</li> </ul> </li> </ol>
○ 비고	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,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
### 3. 비대상자 (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업무지침)

○ 비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응급구조사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</li> <li>- 해당 연도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단 <b>1일도 종사하지 않은 사람</b></li> </ul>
○ 비대상자 신청방법	<p>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「자격신고시스템」 접속</p> <p>② “보수교육 면제·유예 신청서” 작성 및 제출(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: “<b>비대상</b>”)</p> <p><b>[증명서류 예시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미취업자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, 자기근무이력확인서(건강보험심사평가원)</li> <li>● 타직종재직자 :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<b>(응급구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이 명시되어야 함)</b></li> <li>● 해외체류자 : 출입국사실확인서,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2022년도 비대상자일 때 2023년 1월부터 비대상자 신청 가능</b></li> <li>- 보수교육 비대상자 확인은 해당 연도에 한하므로, 같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비대상자 신청을 해야 함</li> <li>- (처리 기간) 5일</li> </ul>

※ 기타 세부사항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